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6호로 2023년 8월 11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3. 주요내용**

-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안 제2조의2)
-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회의 비공포 조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10조)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8. 2.~ 2023. 8. 8.):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의2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기존 회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